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 및 시사점

2025. 4.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 및 시사점

총괄

김빛마로(재정지출분석센터장)

연구진

구윤모(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제 I 장	개요	4
제 II 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6
	1. 통상 및 관세	6
	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 America First Trade Policy	6
	나. 국가별 관세	7
	다. 광물 관세	10
	2. 정부 효율성 추진	13
	가. 정부 효율위원회(DOGE) 출범	13
	나. 연방 인력 효율·생산성 개선/연방 관료제 축소	14
	다. 낭비 지출 개선	16
	라. WHO 탈퇴	17
	3. 경제	18
	가. 미국 우선주의 투자	18
	나.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의 미국 내 효력 금지	19
	다. 규제 완화	20
	라. 인플레이션 대응	23
	4. 기타	24
	가. 국경 안보 확립	24
	나. 과학·기술 혁신	25
	다. 기타	26
제 III 장	정책 평가 및 시사점	28
	1. 주요 정책별 평가	28
	2.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대통령 예산안 방향	36
제 IV 장	결어	40
부록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41
◆	주요 자료 출처	45

I. 개요

- ☑ (배경) 2025년 1월 20일 정오를 기준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기 시작
 - 트럼프 대통령은 첫 공식 업무로 내각 장관 후보자를 지명¹⁾하였으며, 2025년 3월 말 현재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의 상원 인준이 완료된 상태
- ☑ (취임식 연설 주요 언급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과도한 대규모 지출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대응, 정부 효율위원회(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하 DOGE) 설치, 그린 뉴딜 정책 종식(전기차 의무화 철회), 해외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담당할 External Revenue Services(이하 ERS) 출범 계획 등을 언급
 - 이밖에 남부 국경 지역 군인 배치, 해외 범죄 조직 및 범죄 네트워크 대응,²⁾ 제조업 부활, 전략적 비축유 회복 및 에너지 수출(석유와 천연가스를 활용한 경제적 부흥 회복), 정부 검열 중단(위헌적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 종식),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존재함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원칙 등 다양한 정책 계획 등이 거론
- ☑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 조치를 통해 2기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 철회(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바, 이 행정명령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서명된 78개의 행정명령(66개)과 메모랜덤(12개)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백악관, “President Trump Announces Cabinet and Cabinet-Level Appointment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cabinet-and-cabinet-level-appointments/>, 검색일자: 2025. 3. 25.

2) Alien Enemies Act of 1798에 근거

- ☑ 본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50일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
 - 정책 내용은 백악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Ⅰ장) 개요
 - (제Ⅱ장)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발표한 주요 정책 소개
 - (제Ⅲ장) Ⅱ장에서 소개한 정책들 중에서 통상 및 관세, 정부 효율성 추진, 경제 파트너 구분한 주요 정책을 선별하여 평가 및 시사점 도출
 - (제Ⅳ장) 결어

II.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1. 통상 및 관세

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 America First Trade Policy³⁾

- 불공정(unfair)하고 불균형(unbalanced)으로 야기되는 무역적자 대응
 -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국가와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 검토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응 조치와 함께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 조정 등을 위한 검토를 지시

- (무역적자 대응⁴⁾) 불공정 및 불균형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함께 무역적자가 국가에 미치는 안보 및 경제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대응 조치 지시
 - 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상무부·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ERS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관세 등 대외 무역 관련 수입을 징수하는 방안 조사 실시
 - 무역대표부(USTR⁵) 주관으로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검토,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
- (중국 대응) 특히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정 검토, 중국의 부당(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인(discriminatory) 무역 정책 조사 후 대응 조치 추천
- (추가적인 경제·안보 위협 대응) 연방법전(19 U.S.C. §1862)⁶⁾에 근거한 특정 광물(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예외(exclusion)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되고 있는지 검토한 후 권고안 마련 지시

3) 백악관, "America First Trade Policy,"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자: 2025. 3. 5.

4) Memorandum

5)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6) (19 U.S.C. §1862: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세 또는 기타 수입(import) 제한의 감축 또는 폐지를 금지하고 있음

<참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주요 근거 법률

무역법(Trade Act) - 1974년 입법

- (301조) 외국 정부가 무역 협정을 위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무역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협정의 일부를 중단할 권한을 부여
- (201조) 특정 수입품의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는 요건 제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 1962년 입법

- (232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 부과 가능

나. 국가별 관세

- (중국 관세) 미국으로의 합성 오피오이드(opioid) 유입 대응을 위해 추가 관세(20%) 부과
 - 1차 부과(2025.2.4.~): 10% → 2차 부과(2025.3.3.~): 추가 10% 부과
 - 소액 품목 면세(de minimis)는 특정 조건하에 면세 혜택을 적용(2025.2.4.~)하였으나, 이후 30% 관세 부과(2025.5.2.~)하는 것으로 개정 명령 발표(2025.4.2.)
- (멕시코·캐나다 관세) 미국으로의 불법 오피오이드 및 불법 체류자 유입 대응의 일환으로 추가 관세 (25%) 부과(2025.3.4.~)
 - 단 캐나다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10%만 부과
- (멕시코·캐나다 관세 공통점) 초기 관세 부과 개시일(2025.2.4.)이 유예되어 최종적으로 3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요건에 부합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 품목은 2025년 3월 7일부터 면제 조치 실시
 - 소액 품목 면세(de minimis)는 특정 조건하에 면세 혜택 적용(2025.3.2.~)
 - ※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특정 조건) 연방법전 19 U.S.C. §1321은 재무부 장관이 세입에 비해 정부의 행정적 비용과 비효율성(inconvenience)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위 규정⁷⁾에 의해 관세를 예외 적용(disregard)할 수 있음을 규정

(중국·멕시코·캐나다에 추가 관세 부과) 각 국가별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대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추가 관세 부과⁸⁾

7) 실제 100달러 이하의 선물(bona fide gifts)이거나, 입국자의 휴대품이 개인용(personal-use) 또는 가정용(household-use) 물건일 경우 200달러, 쇼핑물에서 직구하는 금액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등이 이에 해당(단 1일 1인(one person on one day) 기준)

8)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추가 관세 부과 후 유예 조치 실시

-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⁹⁾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불법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2월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하였으며, 이후 중국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율 상향(10 → 20%) 조정¹⁰⁾
 - * 동 행정명령은 합성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이 미국의 18~45세의 사망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화학 기업들이 합성 오피오이드 생산에 사용되는 펜타닐 등 화학 물질의 미국으로의 불법적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
 - 소액 품목 면세(de minimis) 혜택의 경우, 2025년 2월 5일 행정명령(14200¹¹⁾)을 통해 특정 조건하에서 소액 면세 혜택을 재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이후 30%의 관세율을 부과(2025.5.2.~)하는 개정 명령 발표(2025.4.2.)¹²⁾
- (멕시코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유예 후 재개)¹³⁾ 멕시코산 제품에 2025년 2월 4일부터 25%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2025.2.1.) → 후속 행정명령¹⁴⁾에 의해 해당 관세 조치 유예*(2025.2.3.)되어 3월 4일 재개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요건에 부합하는 멕시코산 수입 품목은 2025년 3월 7일부터 면세 조치** 실시(2025. 3.6. 발표)¹⁵⁾

9) 백악관,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Executive Order 14195," 2025. 2.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3. 5.

10) 백악관,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 3.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further-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3. 20.

11) 백악관,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 2. 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3. 11.

12) 백악관,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2025. 4. 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further-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as-applied-to-low-value-imports/>, 검색일자: 2025. 4. 4.

13) 백악관,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 Executive Order 14194," 2025. 2.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3. 5.

14) 백악관,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 Executive Order 14198," 2025. 2.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progress-on-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3. 12.

15) 백악관,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2025. 3. 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mendment-to-duties-to-address-the>

- * 멕시코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와 불법 오피오이드 및 기타 약물의 유입에 대응하고자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지만, 이후 멕시코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예정되었던 관세 부과 하루 전에 해당 관세 조치를 약 한 달간 유예
- ** 멕시코 수입품 추가 관세 조치 중 미국 자동차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 등의 이유로 해당 조치 결정
- 소액 품목 면세(de minimis) 혜택의 경우, 소액 면세 혜택 대상인 물품이 25% 추가 관세 적용을 받을 경우 소액 면세 혜택 없이 25%의 관세로 일관 적용¹⁶⁾하는 것으로 결정(2025.2.1.)하였으나, 2025년 3월 2일 행정명령(1422717)¹⁷⁾에서 이를 수정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소액 면세 혜택을 재개하는 것으로 개정
- (캐나다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유예 후 재개)¹⁸⁾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2월 4일부터 25%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2025.2.1.) → 부과 개시일 하루 전에 유예되어 3월 4일 재개 조치(2025.2.3. 발표)¹⁹⁾ →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요건에 부합하는 캐나다산 수입 품목은 2025년 3월 7일부터 면세 조치** 실시(2025.3.6. 발표)²⁰⁾
 - * 즉, 멕시코와 인접해 있는 남부 국경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인접한 북부 국경에서도 불법 이민과 함께 심각한 펜타닐의 불법 밀수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가 관세가 부과 명령이 발표된 것이었지만, 캐나다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관세 조치는 유예되어 3월 4일 재개
 - **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수입품 추가 관세 조치 중 미국 자동차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 등의 이유로 해당 조치 결정

-flow-of-illicit-drugs-across-our-sou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3. 11.

- 16) 소액 면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음(해당 조항 원문: For avoidance of doubt,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under 19 U.S.C. 1321 shall not be available for the articles describ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 17) 백악관,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2025. 3. 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mendment-to-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3. 11.
- 18) 백악관,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 Executive Order," 2025. 2.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ational-border/>, 검색일자: 2025. 3. 5.
- 19) 백악관,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2025. 2.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progress-on-the-situation-at-our-nor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3. 5.
- 20) 백악관,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2025. 3. 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mendment-to-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orthern-border-0c3c/>, 검색일자: 2025. 3. 11.

- 캐나다의 일반 수입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나,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제품은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행정명령²¹⁾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10%의 관세 적용
- 소액 품목 면세(de minimis) 혜택 물품도 동일하게 신규 추가 관세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 3월 2일 행정명령(14226²²⁾)에서 이를 수정하여 특정 조건하에서 소액 면세 혜택을 재개하는 것으로 개정

다. 광물 관세

-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한 안보 위협 대응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추가 관세 25% 부과
 - (관세 부과 조치 변화 사항)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철강 및 알루미늄의 파생(derivative)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부과
- 구리(copper) 수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구리 수입의 영향 평가 등을 지시

☑ (알루미늄·철강 추가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철강 등에 대해 3월 12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proclamation) 발표

- (배경) 트럼프 1기 행정부(2018년)에서는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철강 제품에는 25% 추가 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²³⁾상 안보의 개념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안보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과잉 생산된 알루미늄이 멕시코 등을 통해 우회 수출되면서 미국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이 구조는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역 관행은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

21) 백악관,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claring-a-national-energy-emergency/>, 검색일자: 2025. 3. 5.

22) 백악관,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2025. 3. 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mendment-to-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or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3. 11.

23) CRS,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2022. 4. 1.,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667>, 검색일자: 2025. 3. 28.

- 한편 알루미늄과 철강 각각에 대해 특정 국가²⁴⁾²⁵⁾와는 협상을 거쳐 관세 조정 (adjust: 면제 또는 대체 합의²⁶⁾) 조치가 이루어졌음
-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과 남미의 알루미늄 생산이 지속 증가하여 미국 내 알루미늄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철강의 경우에는 대체 협정으로 인해 쿼터가 적용된 국가들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증가하면서 미국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언급²⁷⁾
 - *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량이 30% 감소하였으며, 같은 해(2024년)에 미국 제련소 가동률(smelter capacity)은 52%에 불과
- 또한 관세 조정된 국가 중 2017년 평균 대비 2024년의 수입량이 각각 캐나다 18%, 멕시코 35%, 호주는 103% 증가하였음을 강조

(알루미늄 관세)²⁸⁾ 2025년 3월 12일부로 관세 대체협정* 종료 및 과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²⁹⁾하여 모든 국가(러시아 제외³⁰⁾)에 적용

* (기존 대체협정 국가에 대한 행정명령 번호) 9758(아르헨티나, 호주), 10106(캐나다), 10782(멕시코; 파생품 포함), 10690(EU; 파생품 포함), 10405(영국; 파생품 포함) 효력 상실 & 9980(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파생품) 효력 상실

- 알루미늄 제품(Aluminum articles)에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알루미늄 파생 (derivative aluminum) 제품 등으로 확대 포함하여 부과

24)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정 및 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국가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25) 철강에 대한 관세 조정 및 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국가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일본, 영국(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이 역시도 종료)

26) alternative agreements

27)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의 생산업체들이 일부 면제국가로 제품을 환적(transshipment), 또는 추가 가공 등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EU 국가들은 철강 관세가 면제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철강을 가공한 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시

28) 백악관,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2025. 2. 1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justing-imports-of-aluminum-into-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3. 6.

29) 즉 대체협정으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던 국가들은 신규 과세 25%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존 10% 부과 국가는 15%p가 인상되는 것임

30) 러시아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10522)에 근거하여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과 파생 제품에 200% 관세 부과되어 있음(2023. 2. 24.)

☑ (철강 관세)³¹⁾ 2025년 3월 12일부로 관세 대체협정을 종료하고, 철강 수입 관세 25%(적용되지 않았던 철강 파생(derivative steel) 제품 등으로 확대 포함) 부과 (2025.3.12. 실시)

- 기존에 대체 합의를 맺은 일부 국가³²⁾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쿼터 적용 등)하에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국가에 25% 추가 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임
- 한편 우크라이나의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 지원을 위해 철강 관세를 면제 (10403; 2022.5.27.)한 후 연장을 거듭하면서 한시적(2023.6.1.~2025.6.1.) 면제 대상(10771; 2024.5.31.)이었으나 이 또한 3월 12일부로 해제 조치

☑ (구리 수입 안보 위협 대응)³³⁾ 알루미늄·철강 관세와는 별개로 무역 확장법³⁴⁾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여 국가 안보에 미치는 구리 수입의 영향 평가를 본 명령일로부터 27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행정명령 발표

- * (무역 확장법 232조)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가능
- 주요 필요 조치로는 ① 미국의 구리 수입 의존도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 ② 위협 완화 조치(관세, 수출 통제, 국내 생산 확대 인센티브 등) 권고안 ③ 미국 구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 포함

31) 백악관,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2025. 2. 1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justing-imports-of-steel-into-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3. 6.

32)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한국, 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33) 백악관, "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2025. 2. 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dressing-the-threat-to-nationalsecurity-from-imports-of-copper/>, 검색일자: 2025. 3. 25.

34) Trade Expansion Act of 1962

2. 정부 효율성 추진

가. 정부 효율위원회(DOGE*) 출범³⁵⁾

*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 효율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해당 위원회는 2026년 7월 4일까지 관련 업무 추진 후 종료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효율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동 조직의 주요 업무는 연방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를 통한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로 규정

* 트럼프 대통령은 2024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낭비를 식별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위원회 출범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본 위원회는 연방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실 직속(United States Digital Service, 이하 USDS)³⁶⁾ 소관의 임시 조직으로 하며, 2026년 7월 4일(2025년 1월 20일 기준, 약 18개월 기간)까지 정부효율 관련 의제 추진 후 종료 예정
- DOGE 출범과 함께 각 연방기관의 장은 USDS와 협의하여 기관별로 최소 4명의 직원이 포함된 DOGE 팀을 배치해야 함
 - 또한 각 기관의 장은 DOGE 팀(① 팀장(Team Lead) ② 엔지니어 ③ 인사 전문 담당자 ④ 법률 전문가(Attorney) 등으로 구성)와 함께 대통령의 DOGE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5) 백악관,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stablishing-and-implementing-the-president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 검색일자: 2025. 3. 7.

36) 기존 조직인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s를 개명하여 United States DOGE Services(USDS)로 설정

나. 연방 인력 효율·생산성 개선/연방 관료제 축소

- ① 연방 기관에서 신규 채용 시, 기관별로 속한 DOGE 팀장과 협의하며 ② 특정 분야를 제외한 연방 기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③ 불필요한 연방기관 및 위원회 등 축소 및 해체

☑ (정부 인력 최적화)³⁷⁾ 연방기관에서 추진하는 신규 채용의 경우, 정부 효율위원회 (DOGE)³⁸⁾의 출범과 함께 기관별로 배치된 DOGE 팀장³⁹⁾과 협의해야 함

- (고용 인원 지침 제시) 정부 인력 최적화 방침에 따라, OMB(관리예산처) 처장은 연방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퇴사하는 직원 4명당 최대 1명만을 고용 하도록 지시
- (직위 신설 지침 제시) 이와 함께, 2025년 1월 20일에 발표된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⁴⁰⁾ 조치(memorandum⁴¹⁾)에 따라 별도로 명시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이 허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직위 신설을 할 수 없도록 함
- (통·폐합 계획) 정부 인력 최적화 행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장은 기관 또는 하위 조직이 법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여부를 식별한 보고서를 OMB 처장에게 제출(폐지 또는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
 - 또한 USDS 관리자는 240일 이내에 본 명령의 이행 상황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 (연장, 수정, 종료 여부에 대한 권고도 포함)

37) 백악관,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 - Executive Order," 2025. 2. 1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lementing-the-president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workforce-optimization-initiative/>, 검색일자: 2025. 3. 7.

38) 본 조직은 2025년 1월 20일 대통령 행정명령(EO 14158)을 근거로 출범하였으며, 연방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실 직속(USDS) 소관의 임시 조직으로 하며,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 의제 추진 후 종료 (참고: USDS: United States DOGE Services → 기존 조직인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s를 개명)

39) 기관별로 배치된 DOGE 팀은 대통령 행정명령(EO 14158)을 근거로 최소 4명의 인력(팀장, 엔지니어, 인사 담당자, 법률 전문가)으로 구성

40) 해당 조치로 인해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공석인 모든 연방 직위는 충원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직위의 신설도 금지되나, 군대, 이민, 국가 안보, 공공 안전, 사회보장, 메디케어, 재향군인 혜택 등의 분야는 예외로 함

41) 백악관, "Hiring Freeze,"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hiring-freeze/>, 검색일자: 2025. 3. 7.

- ☑ (대규모 구조조정)⁴²⁾ 각 기관장은 적용 가능한(applicable) 법률을 준수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신속히 준비(30일 이내 OMB에 통·폐합 관련 보고서 제출)
 - (구조조정 대상)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부서, 행정부가 중단 또는 폐지한 모든 사업 및 기관, 연방정부 셋다운 시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들이 우선적 구조조정 대상
 - 단 공공 안전, 이민 집행, 법 집행 기능과 관련된 분야는 예외로 함
 - (조정 계획) 연방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기관별로 하위 부서의 법률상 필수 기관 (statutorily required entities) 규정 여부에 대한 보고서도 30일 이내 OMB 처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명시
- ☑ (연방 관료제 축소)⁴³⁾ 불필요한 기관의 축소 또는 해체
 - (축소) 프레시디오 신탁,⁴⁴⁾ 미주재단, 미국 아프리카 개발 재단, 미국 평화연구소⁴⁵⁾의 비법적(non-statutory) 기능 및 구성 요소(components) 최대한 제거
 - 축소 제시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구성 요소 및 기능·법률상 필수인지 여부 등에 대한 보고서를 OMB 처장에게 보고
 - (해체) 해외 자발적 원조 자문위원회,⁴⁶⁾ 학술 연구 위원회 및 신용조합 자문위원회,⁴⁷⁾ 커뮤니티 은행 자문위원회,⁴⁸⁾ 코로나 자문위원회,⁴⁹⁾ 건강 형평성 자문위원회⁵⁰⁾ 등

42) 백악관,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 – Executive Order,” 2025. 2. 1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lementing-the-president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workforce-optimization-initiative/>, 검색일자: 2025. 3. 7.

43) 백악관, “Commenc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2025. 2. 1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commencing-the-reduction-of-the-federal-bureaucracy/>, 검색일자: 2025. 3. 7.

44) Presidio Trust: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국립공원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미 연방 정부 기관

45) Inter-American Foundation, United States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idio Trust

46) Advisory Committee on Voluntary Foreign Aid

47) Academic Research Council and the Credit Union Advisory Council

48) Community Bank Advisory Council

49) Advisory Committee on Long COVID

50) Health Equity Advisory Committee

- 상급 기관장은 14일 이내에 폐지 대상 위원회 해체 필요
- (축소 계획) 30일 이내 국가안보 보좌관, 경제정책 보좌관, 국내정책 보좌관은 불필요한 정부 기관 및 연방 자문위원회 목록을 추가로 식별하여 대통령에게 제출

다. 낭비 지출 개선

- 불법 체류자에 대한 세금 기반의 지원 정책 금지
- 낭비된 지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폐지·취소·종료된 연방 자금의 세부 내역 공개

☑ (공공 혜택 지원 제한)⁵¹⁾ 국민 세금이 불법 이민을 유발(magnet)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 혜택 금지⁵²⁾

- 불법 체류자가 공공 혜택(현금 또는 비현금성)을 받도록 허용하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식별한 후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조정
- 연방 예산뿐만 아니라 주/지방 정부에 지급하는 연방 자금 또한 불법 이민을 유인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 이와 함께 불법 이민과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강제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 (sanctuary) 정책 지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함

51) 백악관, “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 – Executive Order,” 2025. 2. 1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nding-taxpayer-subsidization-of-open-borders/>, 검색일자: 2025. 3. 7.

52) 동 행정명령은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 P.L. 104-19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납세자에게 지원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필요(needs)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 자원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임을 언급

☑ (낭비 지출 투명성 추진)⁵³⁾ 각 정부 기관의 장은 행정부의 정책을 증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된 모든 프로그램, 취소된 계약, 종료된 보조금 및 기타 중단된 연방 자금 집행 내역의 세부 정보 공개를 지시(direct)하는 메모랜덤을 발표

- 동 메모랜덤은 국민은 정부의 세금 낭비에 대해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국민의 이익을 증진(promote)하지 않는 프로그램, 계약, 보조금 등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을 비판

라. WHO 탈퇴

- WHO를 탈퇴하며, WHO를 대신할 국제 협력 파트너 파악 지시

☑ 2021년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WHO 탈퇴 통보를 철회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통령 서한 철회⁵⁴⁾

- * 동 행정명령은 ①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부실 대응 ② 기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실패 ③ 필요한 개혁 신속 도입 실패 ④ WHO의 독립성 유지 실패 등을 이유로 트럼프 1기 정부 시기인 2020년에 WHO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 바 있음⁵⁵⁾
-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 안보 리더십 강화에 대한 행정명령(13987⁵⁶⁾)도 철회하면서, WHO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및 자원 지원 등 중단, 그리고 WHO를 대신할 국제 협력 파트너 파악을 지시

53) 백악관, “Radical Transparency About Wasteful Spending,” 2025. 2. 1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radical-transparency-about-wasteful-spending/>, 검색일자: 2025. 3. 7.

54) 백악관,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Executive Order,”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the-worldhealth-organization/>, 검색일자: 2025. 3. 7.

55) The Heritage Foundation, “W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Must Do to Earn Back U.S. Support,” 2025. 8. 7., <https://www.heritage.org/global-politics/report/what-the-world-health-organization-must-do-earn-back-us-support>, 검색일자: 2025. 3. 20.

56) Executive Order 13987—Organizing and Mobilizing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Provide a Unified and Effective Response To Combat COVID-19 and To Provide United States Leadership on Global Health and Security(2021. 1. 20.)

- 또한 WHO가 미국에 대해 불공정하고(unfairly) 과도한(onerous) 재정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함께 언급
- WHO는 미국의 WHO 탈퇴 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고려를 요청하는 발표문을 게재⁵⁷⁾

3. 경제

가. 미국 우선주의 투자

- 미국 투자 우대 정책으로 해외 국가(allies, partners)들이 미국에 대한 10억달러 초과 투자 시 환경 검토 신속 처리
 - 단 안보적 관점에서 중국 및 기타 적대국은 평가를 거쳐 우대 처리 수준 조정

(자본시장 강화를 통한 황금시대 발판 마련)⁵⁸⁾ ① 투자 촉진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 마련 ② 10억달러 초과 투자 자금을 우대 사항 제시 등

- 특정 우방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하여, 미국 첨단 기술 및 중요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신속히 승인(단 미국의 해외 적대국과의 협력(partnering) 금지 조건 부과)
-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내 투자(any investment)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 신속 처리
- 다만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가치하에 무조건적인 투자 허용이 아닌 중국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주요 기업 및 자산 인수는 차단

57) WHO, “WHO comments on United States’ announcement of intent to withdraw,” 2025. 1. 21., <https://www.who.int/news/item/21-01-2025-who-comments-on-united-states-announcement-of-intent-to-withdraw>, 검색일자: 2025. 3. 20.

58) 백악관,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Memorandum, 2025. 2. 2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rica-first-investment-policy/>, 검색일자: 2025. 3. 7.

- 구체적으로 핵심 기술, 필수 인프라, 개인 데이터 및 기타 민감한 분야와 관련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외국 투자자의 국가적 배경과 중국 및 기타 외국 적대국* (foreign adversaries)과의 관계에서 독립적 관계 여부를 평가한 후 제한 수준 조정

* 외국 적대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마두로 정권)

나.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의 미국 내 효력 금지

■ OECD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효력 금지

- ☑ (OECD 글로벌 조세 협정 취소⁵⁹⁾) 의회의 관련 조항 채택이 없는 한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OECD의 글로벌 조세 협정*(Global Tax Deal)이 미국 내에서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을 것임을 명시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OECD Global Anti-Base Model Rules(Pillar Two)는 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이 15%(=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과세되면 다른 국가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과세권(top-up tax)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의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은 미국 시민의 소득에 대한 초국적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및 노동자를 위한 조세 정책 수립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임을 비판
- 재무부 장관 등을 주체로 하여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제 규정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보호 및 대응 조치 검토 지시(60일 이내에 보고)

59) 백악관,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Deal (Global Tax Deal),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the-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oecd-global-tax-deal-global-tax-deal/>, 검색일자: 2025. 3. 7.

다. 규제 완화

- 순 규제 비용이 '0 이하'가 되도록 목표 제시
- 자동차 규제 철회 및 부처의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규제 개선
-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종료 및 기타 환경 규제 개선

☑ (신규 규제 제한)⁶⁰⁾ 규제에 대한 준수 비용 및 미준수 시 발생하는 리스크가 증가하기에 신규 규제 도입시 최소 10건*을 폐지하는 내부 규칙 도입

* each new regulation issued, at least 10 prior regulations be identified for elimination

- (규제 비용 “0” 목표 도입) 2025회계연도부터 모든 연방기관은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시, 폐지된 규제를 포함한 전체 순 규제 비용이 '0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며, 이는 OMB 처장이 결정(연방기관의 장에게 지침 제공 포함 및 OMB 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규제 추가 또는 삭제 불가⁶¹⁾)

- 2026회계연도부터 모든 정부 기관은 매년 OMB에 규제 비용 보고서(annual regulatory cost) 제출

* 단 국방, 국가안보, 국토안보, 외교, 이민 관련, 인사 등 분야는 예외 적용

- (불필요한 규제 개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에 발표한 행정명령(14154⁶²⁾)을 통해 부처별 인허가 절차 개선, 환경 관련 자동차 규제 철회 등을 제시

- (자동차 규제 철회) 전기차의 강제 구매를 유도(effectively mandate)하는 조치 등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접근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한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확대하는 행정명령 조치⁶³⁾

60) 백악관,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2025. 1. 3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prosperity-through-deregulation/>, 검색일자: 2025. 3. 14.

61) Unified Regulatory Agenda에서 관리

62) 백악관, “Unleashing American Energy –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검색일자: 2025. 3. 10.

63) *The Guardian*, “Trump revokes Biden order that had set 50% electric vehicles target for 2030,” 2025. 1. 21.,

- (부처별 인허가 절차 개선) 국방부, 내무부, 농무부, 상무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등⁶⁴)의 기관장은 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하는 부분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함을 지시
- ☑ (미국 에너지 개발 활성화)⁶⁵) 석유(oil), 천연가스, 석탄, 수력발전, 바이오연료(bio-fuels), 핵심 광물 등을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 개발의 잠재적 저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지시 및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을 종결
 - 연방 기관의 장은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규제, 명령, 지침, 정책, 합의문(settlements) 등을 검토하여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바이오 연료, 핵에너지, 중요 광물 등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조치를 식별할 것을 지시
 - 모든 연방 인허가 및 규제 절차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환경 고려 요건만 준수하고, 그 외 이념적 기준(ideologically motivated methodologies)은 배제하는 지침 제시
 - * 또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관련, 환경보호청장에게 개선 지침을 지시(60일 이내)
 -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사회적 탄소 비용 등)을 평가한 IWG⁶⁶)(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평가를 위한 범부처 작업반)는 해산되며, 그 결과물을 정책에서 제외(withdrawn)
 - * 동 행정명령(14154)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계산은 논리적 결함이 있고, 과학적 기반이 미약하고, 정치적 편향성(politicization)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absence of foundation in law)하다고 명시하면서, 이런 방식은 규제 결정을 임의적으로 지연해 미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비판
 -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종결
 -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P.L. 117-58⁶⁷) 및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P.L. 117-169⁶⁸)을 근거로 배정된 자금*의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20/trump-executive-order-electric-vehicles>, 검색일자: 2025. 3. 25.

64) 이 외에도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환경보호청, 환경품질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음

65) 백악관, "Unleashing American Energy -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검색일자: 2025. 3. 10.

66) IWG: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67)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전기차 충전소를 위한 자금 등을 포함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보조금, 대출, 계약 또는 기타 재정적 지출에 대한 절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함을 명시
- 이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 검토 재개, 광물 지배력 회복의 일환으로 희토류(rare earth minerals)를 포함한 비연료(non-fuel minerals)의 광물 채굴 (mining) 및 가공(processing)을 저해하는 조치 등을 식별하기 위한 검토 지시
- 추가적으로 목재 생산 확대 정책(행정명령 14225⁶⁹)을 통해 그동안 국내 목재 공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야기된 건설 및 에너지 비용 증가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

〈참고〉 “에너지 개발 활성화” 행정명령(14154)에서 철회한 바이든 정부의 주요 행정명령들

- (a) 다음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해당 명령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관 및 사무실을 폐지
- (i) 2021.1.20. EO 13990(공중 보건, 환경 보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 복원)
 - (ii) 2021.1.20. EO 13992(연방 규제 관련 특정 행정명령 철회)
 - (iii) 2021.1.27. EO 14008(국내 및 해외에서의 기후 위기 대응)
 - (iv) 2021.1.27. EO 14007(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설립)
 - (v) 2021.2.4. EO 14013(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복원 및 기후 변화의 이주 영향 계획)
 - (vi) 2021.5.7. EO 14027(기후변화지원실(Climatic Change Support Office) 설립)
 - (vii) 2021.5.20. EO 14030(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 (viii) 2021.8.5. EO 14037(청정 자동차 및 트럭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 (ix) 2021.12.8. EO 14057(연방 지속가능성 촉진을 통한 청정 에너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 (x) 2022.4.22. EO 14072(국가의 산림,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 강화)
 - (xi) 2022.9.12. EO 14082(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 (xii) 2023.4.21. EO 14096(국민을 위한 환경 정의에 대한 국가적 약속 이행)
- (b) “American Climate Corps”(미국 기후 봉사단)와 관련된 모든 활동, 프로그램 및 운영 종료

68)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69) 백악관, “Immediate Expansion of American Timber Production,” 2025. 3.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immediate-expansion-of-american-timber-production/>, 검색일자: 2025. 3. 11.

라. 인플레이션 대응

■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정책 철회

☑ (긴급 물가 대응)⁷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한 가전제품 비용 절감, 식료품 및 연료(fuel) 비용을 증가시키는 강압적(coercive) 기후 정책* 제거 등의 조치를 지시

* 경제정책 보좌관⁷¹⁾은 강압적 기후 정책 제거 조치⁷²⁾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행 여부(status of the implementation)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백악관에서는 기업들에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을 사실상 퇴출하도록 강요한 규제 (가솔린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가 위법(unlawful)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총 주택 건설비용의 약 25%에 달하는 규제 관련 비용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해당 규제의 정당성(illegal)에 대한 의문 제기
- 또한 미국의 풍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조치로 인해 교통비와 제조업 비용이 폭등한 것임을 언급하며,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
- 이 외에도 메모랜덤⁷³⁾을 통해 해상 풍력(offshore wind)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허가, 임대, 대출 등 조치 중단을 통한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침 제시
 - 트럼프 정부는 풍력 프로젝트가 간헐적인 전력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보조금이 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 국가 안보, 상업적 이익 등을 포함하여 조류 및 해양 포유류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환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

70) 백악관, "Delivering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Defeating the Cost-of-Living Crisi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livering-emergency-price-relief-for-american-families-and-defeating-the-cost-of-living-crisis/>, 검색일자: 2025. 3. 10.

71)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72) 동 메모랜덤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 조치로는 ① 주택 비용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확대 ②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 ③ 식료품(food)과 연료(fuel) 비용을 증가시키는 유해(harmful)하고 강압적인(coercive) '기후' 정책 폐지 ④ 기타 등이 있음

73) 백악관, "Temporary Withdrawal of All Area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from Offshore Wind Leasing and Review of the Federal Government's Leasing and Permitting Practices for Wind Projects," memorandum,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temporary-withdrawal-of-all-areas-on-the-outer-continental-shelf-from-offshore-wind-leasing-and-review-of-the-federal-governments-leasing-and-permitting-practices-for-wind-projects/>, 검색일자: 2025. 3. 10.

4. 기타

가. 국경 안보 확립

- 국가 비상사태 선포(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를 통한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에 대한 기존 관행을 종료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

☑ (국가 비상사태 선포)⁷⁴⁾ 남부 국경지역에 국가비상사태 선포⁷⁵⁾와 함께 국경 장벽 건설 및 남부 국경 지역 군대 배치

-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해 물리적인 국경 장벽(physical wall) 건설을 지시
- 남부 불법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면서 국경 안보 통제를 위해 군대 배치

☑ (불법 이민자 조치⁷⁶⁾) 불법 이민자 체포 후 구금하지 않고 석방(catch and release)한 관행을 종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정책 지침 제안 제시

- 이와 함께 세관국경보호국(CBP⁷⁷⁾) ONE APP(이민 예약 시스템, 간소화된 망명 절차 등의 기능이 포함된 CBP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단 제시
- 또한 메모랜덤⁷⁸⁾을 통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의 수용 능력 확대 방침 지시
 - 관타나모 만(Guantanamo Bay) 해군 기지에 불법 체류 중이면서 우선순위로 지정된 범죄 외국인에 대한 추가 구금 공간 확보

74) 백악관,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claring-a-national-emergency-at-the-southern-border-of-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3. 10.

75)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01 et seq.)의 제201조 및 제301조에 의거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 법전(10 U.S.C. 12302조)에 따라 필요한 군사 조치를 발동할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

76) 백악관, "Securing Our Borders –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ecuring-our-borders/>, 검색일자: 2025. 3. 10.

77)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78) 백악관, "Expanding Migrant Operations Center at Naval Station Guantanamo Bay to Full Capacity," Memorandum, 2025. 1. 2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xpanding-migrant-operations-center-at-naval-station-guantanamo-bay-to-full-capacity/>, 검색일자: 2025. 3. 14.

※ 트럼프 대통령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을 구금하도록 한 Laken Railey Act(P.L. 119-1)에 법률 서명(2025.1.29.)⁷⁹⁾

나. 과학·기술 혁신

-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추진단 출범 등을 통한 미국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제시
- 이념 중심이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

☑ (디지털 자산 산업 촉진)⁸⁰⁾ 미국의 경제적 자유(economic liberty)와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하에 디지털 자산 및 금융 혁신 촉진

- 개인 및 기업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억압하는 행위 금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채굴 및 검증 활동 참여 등

-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제위원회(NEC) 산하에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추진단(Digital Asset Markets working group) 출범

-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미국 주권의 위협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정부 기관은 미국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s⁸¹⁾) 발행 금지

* CBDC: 국가의 공식 통화 단위로 표시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화폐 가치(monetary value)로, 중앙은행이 직접 책임지는 자산을 의미

-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에 서명한 CBDC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지시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명령 14067’⁸²⁾을 폐지하며, 180일 이내에 실무추진단은 대통령에게 디지털 자산 관련한 연방 규제 체계를 제안하도록 지시

79) 백악관,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S.5 into Law,” 2025. 1. 2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resident-donald-j-trump-signed-s-5-into-law/>, 검색일자: 2025. 3. 25.

80) 백악관,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 Executive Order,” 2025. 1. 2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trengthening-american-leadership-in-digital-financial-technology/>, 검색일자: 2025. 3. 14.

81) CBDC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82) Executive Order 14067: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⁸³⁾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2년 후 자동으로 종료되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 개인의 성과보다 집단 정체성을 우선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희생시키며 획일성을 강요하는 현 이념적 교조(ideological dogma) 체계를 비판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과학 기술자문위원회 설립(2년 후 종료) 명령이 명시된 행정명령⁸⁴⁾(2021.1.27.)을 철회
-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의 후속 행정명령(14109)에 의해 2025년 9월 30일까지 설립 효력이 연장되었던 특정⁸⁵⁾ 위원회들의 설립 효력 연장도 철회

다. 기타

- 국제기구 탈퇴·군인 복권·환경 규제 개선 등 다방면 정책 전환 추진

☑ 그 밖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특정 UN 기구 탈퇴·자금 지원 중단 및 보류 등
 -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주재 미국 대표 직위 종료 및 분담금 보류,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구호사업기구(UNRWA) 기여금 및 보조금 등 중지 명령에 따라, 국무장관은 UNHRC와 UNRWA에 자금 지원의 중지와 함께, 2025년부터 분담금 및 미지급 분담금 지급도 중지하는 통보를 지시

83) 백악관,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2025. 1. 2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residents-council-of-advisors-on-science-and-technology/>, 검색일자: 2025. 3. 14.

84) Executive Order 14007

85) 14109 행정명령은 다수의 연방 기관에 속한 자문위원회 설립 효력을 연장하였으며, 연장된 주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예: 국제노동기구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EO 12216), 흑인 대학 발전 자문위원회(President's Board of Advisors on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EO 14041), 국가 인프라 자문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Advisory Council, EO 13231), 환경정의 자문위원회(White House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uncil, EO 14008) 등이 있으며,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기존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연장된 위원회인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가입 여부(membership) 재검토(90일 이내)⁸⁶⁾⁸⁷⁾
-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UN 대사와 협의하여 이 외에 모든 국제 기구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요소, 해당 기구 또는 조약이 개혁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미국의 지원 재검토 및 철수 검토⁸⁸⁾
- 미국 동맹국을 위협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⁸⁹⁾) 관련자의 재산권 동결 등의 제재 조치⁹⁰⁾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따라 강제 전역된 군인들의 재입대 허용⁹¹⁾⁹²⁾
- 반유대주의(anti-semitism) 행위자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추방 등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⁹³⁾
- 기능·건강·비용상 문제점이 있는 종이 빨대 조달 및 강제 사용 중단⁹⁴⁾

86) 재검토 여부는 90일 이내에 완료

87) 동 행정명령은 일부 UN 기구 및 기관이 UN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동맹국을 공격(attack)하고 반유대주의를 조장(propagating)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비판

88) 백악관,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And Ending Funding To Certain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And Reviewing United States Support To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Executive Order," 2025. 2. 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and-ending-funding-to-certain-united-nations-organizations-and-reviewing-united-states-support-to-all-international-organizations/>, 검색일자: 2025. 3. 14.

89)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0) 백악관, "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Executive Order," 2025. 2. 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sanctions-on-the-international-criminal-court/>, 검색일자: 2025. 3. 14.

91) 재입대한 군인들이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하며 급여 전액 지급, 복지, 보너스 지급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92) 백악관, "Reinstating Service Members Discharged Under The Military's COVID-19 Vaccination Mandate - Executive Order," 2025. 1. 27.,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instating-service-members-discharged-under-the-militarys-covid-19-vaccination-mandate/>, 검색일자: 2025. 3. 14.

93) 백악관, "Additional Measures to Combat Anti-Semitism - Executive Order," 2025. 1. 2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dditional-measures-to-combat-anti-semitism/>, 검색일자: 2025. 3. 14.

94) 백악관, "Ending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Executive Order," 2025. 2. 1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nding-procurement-and-forced-use-of-paper-straws/>, 검색일자: 2025. 3. 14.

III. 정책 평가 및 시사점

1. 주요 정책별 평가

◆ 관세 정책

- 트럼프 2기 정부는 외교와 안보를 어우르는 정책의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
 - 단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발언 및 계획으로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우려 제기
-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방국의 개념이 단순 상업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이념 등 가치* 중심의 개념으로 확대된 측면 존재
 - * WHO 탈퇴·교육부 폐지 등의 정책도 이념적 기준을 중심으로 추진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의 경우, 루비오 국무장관은 관세 부과 후 양자 무역협정 가능성도 시사
 - 단 중국 중심의 관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성격 존재⁹⁵⁾

- 즉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방안의 기능이 있는 한편, 단순한 무역 정책 개념을 넘어서, 외교적 도구(diplomatic tool) 또는 제재(sanctions)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미국 내 불법 마약 및 불법 이민(멕시코, 캐나다)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최우선적으로 관세가 적용된 것도 관세가 외교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
 - * 불법 마약과 불법 이민 외에도,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상위 10위 내에 있다는 공통점도 있음(표 1) 참고

95) The Heritage Foundation, "Trump's Targeted Tariff Proposals Are Already a Notable Success," 2025. 1. 10., <https://www.heritage.org/trade/commentary/trumps-targeted-tariff-proposals-are-already-notable-success>, 검색일자: 2025. 3. 21.

〈표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10위 국가(2024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국가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중국	342,629	307,967	352,807	382,134	279,107	295,402
2. 멕시코	99,417	110,964	105,375	127,825	152,473	171,809
3. 베트남	55,615	69,667	90,919	116,168	104,583	123,463
4. 아일랜드	52,088	55,385	60,143	66,648	65,554	86,748
5. 독일	67,051	56,895	69,290	73,741	82,574	84,824
6. 대만	23,027	30,216	40,173	47,759	47,811	73,927
7. 일본	69,111	55,476	60,070	67,777	71,555	68,468
8. 한국	20,972	25,033	29,296	43,226	51,098	66,007
9. 캐나다	25,769	13,813	47,671	78,193	64,263	64,192
10. 인도	23,656	24,173	33,491	38,577	43,311	45,664

자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TradeStats Express - U.S. Trade by Partner (countries and regions)," 검색일자: 2025.3.23.

- 한편 중국의 경우, 불법 마약의 주 공급 지역으로 지목되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중국은 그 자체로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및 위협 국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
 - 다만 관세 정책은 소비자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⁹⁶⁾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의 대상 국가 및 관세율 등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현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이 상업적인 개념은 물론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정책을 기준으로 개별 무역 협정의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
- * 일례로 밴스 부통령은 매년 진행되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연합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근본적인 가치들 중 일부에서 후퇴하고 있음을 비난⁹⁷⁾

96) Brookings, "Trump's 25%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will be a blow to all 3 economies," 2025. 2. 3.,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rumps-25-tariffs-on-canada-and-mexico-will-be-a-blow-to-all-3-economies/>, 검색일자: 2025. 3. 21.

97) BBC, "JD Vance attacks Europe over free speech and migration," 2025. 2. 15., <https://www.bbc.com/news/articles/ceve3wl21x1o>, 검색일자: 2025. 3. 25.

* 비단 관세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부 폐지나 WHO 탈퇴도 단순히 비효율적 지출 감축 등 이유 외에도 이념적 편향성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일괄적으로 관세 적용 후 개별 국가와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계획을 언급⁹⁸⁾한 바 있으며, 새로운 협정 체결 결과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

- 2025년 3월 26일에 발표된 대통령 선언문⁹⁹⁾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국가¹⁰⁰⁾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명령도 이런 일괄 관세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추정

*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개시일은 2025년 4월 3일이나, 자동차 부품은 추후(연방관보¹⁰¹⁾에 지정된 날짜부터)에 적용하되, 2025년 5월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의 미국 내 효력 금지¹⁰²⁾

- OECD의 글로벌 조세 협정은 탈퇴 조치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중 → 글로벌 최저한세의 미국 내 도입 여부 불투명
 - 실제 도입하려면, 헌법 조항(Article I, Section 8, Clause 1)인 의회의 조세 징수 권한에 근거하여 입법 조치 선행 필요

98) Reuters, "Rubio says US could engage in new trade deals after tariffs imposed," 2025. 3. 17., <https://www.reuters.com/markets/us/rubio-says-us-could-engage-new-trade-deals-after-tariffs-imposed-2025-03-16/>, 검색일자: 2025. 3. 20.

99) 백악관,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2025. 3. 1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3. 31.

100) USMCA 협정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은 비미국산 제품(non-U.S. content)에 한해서만 25% 관세 부과

101) Federal Register for automobile parts

102) Tax Foundation, "Five Things to Know About Trump's Global Minimum Tax Order," 2025. 1. 22., <https://taxfoundation.org/blog/trump-global-minimum-tax-order/>, 검색일자: 2025. 3. 20.

- ☑ 글로벌 최저한세¹⁰³⁾는 결국 미국 의회의 승인(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며, 트럼프 정부의 대통령 조치(memorandum)를 통해 행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단된 상황이기에 현재 14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체계라 해도 미국의 협조가 없다면 전반적인 추진력은 약해질 가능성 존재¹⁰⁴⁾
- 현재 미국은 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의회의 입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 트럼프 정부는 내부 규칙 공표를 통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
 - ※ 미 의회는 2022년 8월 12일에 의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¹⁰⁵⁾에서 수입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는 다른 미국의 자체적인 대체 최저세 15%¹⁰⁶⁾(CAMT¹⁰⁷⁾) 제도를 도입¹⁰⁸⁾
 -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이 국내에서 효력이 생기려면 미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의회의 조세 징수 권한에 따라 의회의 입법 조치 필요
 -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탈퇴 조치는 없으나, 2025년 1월 20일에 발표된 메모랜덤의 주된 취지는 해당 협정의 탈퇴 조치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

103) OECD 조세 협정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의

104) Global Trade Alert, "Trump's Global Minimum Tax Reset Signals the Return of Digital Trade Frictions," 2025. 1. 22., <https://globaltradealert.org/blog/Trump-Memorandum-Global-Minimum-Tax-and-DST-Return>, 검색일자: 2025. 4. 22.

105)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H.R. 5376, P.L. 117-169)은 바이든 정부 첫 해인 2021년 11월 19일에 의회 하원을 통과한 후 교착 상태에 있던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을 대체한 법으로 2021년 4월에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미국 가족계획(AFP)으로 소개된 바 있음

106)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이익(AFSI, 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을 기준으로 함

107) CAMT: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108) Tax Foundation, "How Doe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Minimum Tax Compare to Global Minimum Tax?," 2022. 8. 2., <https://taxfoundation.org/blog/inflation-reduction-act-minimum-tax/>, 검색일자: 2025. 3. 28.

〈참고〉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에 대한 memorandum 주요 조치 원문 예시

생략....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OECD shall notify the OECD that... 중략 ... Global Tax Deal have no force or effect within the United States absent an act by the Congress adopt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Global Tax Deal.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hall take all additional necessary steps within their authority to otherwise implement the findings of this memorandum ..생략..

→ 재무부 장관과 OECD 주재 미국 상임대표는 공식적인 OECD 글로벌 조세 협정 효력이 없음을 통보하고,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에게 메모랜덤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

출처: 백악관,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Deal (Global Tax Deal),” 2025.1.20.

◆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종식

-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서 다룬 자금 집행은 동격인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도 무력화가 가능하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 조치로 폐지 가능
 - 추가적으로 의회에 자금 승인 폐지(또는 한시적 유보) 의결을 요청하는 방법도 존재

☑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종식¹⁰⁹⁾)¹¹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에서 입법되었던 자금의 중단*을 명령한바, 행정명령보다 상위 개념인 법률에서 규정한 자금 집행 중단에 한해서 이는 결국 의회의 예산 취소 승인 또는 신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9) 그린 뉴딜 종식은 전반적인 에너지 위기의식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파리 협정 탈퇴 등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불필요한 규제를 탈피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고자 함

110) The Heritage Foundation, “Trump Administration Puts Subsidized Green-Energy Companies on a Diet,” 2025. 2. 21., <https://www.heritage.org/energy/commentary/trump-administration-puts-subsidized-green-energy-companies-diet>, 검색일자: 2025. 3. 21.

〈참고〉 행정명령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자금 집행 중단 관련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연방 기관은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P.L. 117-58¹¹¹⁾) 및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P.L. 117-169¹¹²⁾)을 근거로 배정된 자금을 대해 집행 중단 명령을 내림
- 자금 집행 중단에 대한 내용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그램¹¹³⁾ 및 충전 및 연료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¹¹⁴⁾을 통해 제공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사업 등에 대한 명시는 없음
- 동 행정명령에 따라 각 연방 기관은 해당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 대출, 계약, 기타 모든 재정 집행 절차, 정책 및 프로그램이 본 명령 제2조에 명시된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함
- 이 명령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기관장은 국가경제위원회(NEC) 보좌관 및 관리예산처(OMB) 처장에게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정책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도 포함)

- 1974년에 입법된 지출유보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예산의 집행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행정명령만으로는 자금 집행 중단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
 -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자금을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자금 지출을 유보할 수는 있음
 -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대해 지출을 유보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위법이라는 감사원(GAO)의 유권 해석¹¹⁵⁾이 발표되기도 함
 - * GAO는 관리예산처(OMB)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금(약 1억 1,400만달러 규모)을 보류한 사안에 대해 법률위반이라는 유권 해석 발표(2020.1.16.)¹¹⁶⁾

111)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112)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113)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Formula Program

114) Charging and Fueling Infrastructure Discretionary Grant Program

115) 감사원은 1974년에 입법된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세출예산 유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은 좁고(narrow) 제한적(limited)임을 밝히고 있으며, 동 법은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관리예산처가 예산을 보류할 수 없음을 언급

116) GAO, "Press statement regarding GAO Decision B-331564,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Withholding of Ukraine Security Assistance," 2020. 1. 16., <https://www.gao.gov/press-release/press-statement-regarding-gao-decision-b-331564%2C-office-management-and-budget-withholding-ukraine-security-assistance>, 검색일자: 2025. 3. 25.

-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 조항 자체를 단독으로 지연 또는 중단할 수는 없겠으나, 예산 취소*(rescission) 제도 등을 통해서도 자금 집행 중단이 가능(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협조가 수반된다면 의회 승인은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음)

* 1974년에 제정된 의회예산법은 대통령이 승인된 재원을 일부 폐지(budget rescission)하는 제안¹¹⁷⁾을 의회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

- 재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은 의회에 특별서한을 보내어 회기 중 45일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연방 기관이 해당 재원을 사용-지출원인행위나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must) 함

〈참고〉 지출유보 통제법¹¹⁸⁾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지출유보통제법(ICA)은 의회가 해당 자금을 철회/폐지(rescind)하지 않는 한 예산집행의 보류는 일시적으로만 허용됨
- 지출유보*통제법(ICA)은 낙선 행정부 시절 의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에 대해 낙선 대통령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으로서, 대통령이 자금의 연기 또는 취소 등을 할 경우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 지출의 유보(impoundment)란 행정부의 직원 및 공직자 등이 연방자금의 지출 등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배제(preclude)하려 하는 작위(action) 또는 부작위(inaction)를 뜻함

◆ **정부 효율**

- 트럼프 2기 행정부,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통한 비효율·사기 지출에 대한 정책적 의지 활발히 추진 중
 - 사회 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대규모 의무지출에 대한 사기성 지출 대응 입장 명확히 언급

117) 일시적 연기(deferral)하는 제안(최대 45일)도 가능

118) GAO, "Impoundment Control Act--Withholding of Funds through Their Date of Expiration," 2018. 12. 10., <https://www.gao.gov/products/b-330330>, 검색일자: 2025. 3. 25.

☑ (정부 효율) 트럼프 2기 정부는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의 비효율적 지출 분야를 폐지, 축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이미 행정명령 등의 대통령 조치를 통해 정부 효율 차원의 여러 위원회 및 기관의 축소 및 폐지가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 효율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¹¹⁹⁾ 앞으로도 정부 효율 위원회가 종료되는 2026년 7월까지 지속적인 낭비 지출 분야에 대한 식별 및 조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 작업에 있어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언급하긴 하였으나, 사기*(fraud)에 의한 지급은 대응할 계획임을 명확히 언급¹²⁰⁾하였기에 이에 대한 식별 작업 및 관련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GAO는 사기(fraud)의 개념을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통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때때로 정부에 직접적인 재정 손실(direct financial losses)을 초래하지 않는 혜택(예: 여권 사기)을 포함할 수도 있음을 언급

- GAO에서 발표한 <Fraud & Improper Payments>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회계연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정부의 연간 사기 손실 금액의 범위는 2,330억~5,2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¹²¹⁾

* 같은 자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총 1,620억달러의 부적절 지급(improper payments) 중 메디케어(34%)와 메디케이드(19%)가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19) *Politico*, "Musk, standing before Trump's Cabinet, gets their applause and approval," 2025. 2. 26., <https://www.politico.com/news/2025/02/26/musk-cabinet-trump-applause-00206245>, 검색일자: 2025. 3. 25.

120) 백악관, "SUNDAY SHOWS: The Golden Age of America Is Here," 2025. 3. 9.,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3/sunday-shows-the-golden-age-of-america-is-here/>, 검색일자: 2025. 3. 25.

121) GAO, "Featured Topic - Fraud & Improper Payments - GAO examines fraud and improper payments in federal programs." <https://www.gao.gov/fraud-improper-payments>, 검색일자: 2025. 3. 22.

2.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대통령 예산안 방향

-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행정명령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는 한편, 의회는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비용이 추정되고 있는 2017 세계개혁 연장 논의에 착수(세계 개혁 연장은 입법 협조 필요)
- 트럼프 정부는 2025회계연도의 정부 운영은 임시예산으로 진행하면서 2026회계연도 본예산에 본격적인 공약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으로 있는 의회는 예산 청사진(결의안)을 결의한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는 낭비 지출 감축 및 규제 완화 기조를 강조함과 동시에 에너지 및 광물 정책에 대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하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는 향후 10년간 의무지출 2조달러를 감축하되, 국방 국토안보 등의 예산을 확대를 포함하여 최대 4.5조달러의 적자를 확대하는 예산결의안 가결
 - 상원 예산위원회는 국경안보국방 재건 에너지 생산 강화 중심의 예산결의안 가결

☑️ 트럼프 대통령은 2024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다양한 공약을 행정명령 등 대통령 조치 수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 중

- 에너지 정책, 낭비 지출 감축 등 정책, 정부 효율, 국경 강화, 군사력 강화 등
-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2017 세계개혁법* 연장 정책은 의회 하원의 예산 결의안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양(상·하)원을 아우르는 합의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음

* Tax Foundation은 2017 세계개혁 연장(2025~2034)으로 인한 비용을 4.5조달러로 전망¹²²⁾

☑️ (2025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¹²³⁾¹²⁴⁾ 한편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는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5회계연도(2025.10.~2026.9.)를 전년도

122) Tax Foundation, "Budget Reconciliation: Tracking the 2025 Trump Tax Cuts," 2025. 3. 21.,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x-cuts-2025-budget-reconciliation/>, 검색일자: 2025. 3. 21.

123)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mmittee Releases Bill to Keep Government Open, Working for the American People," 2025. 3. 8.,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committee-releases-bill-keep-government-open-working-american-people>, 검색일자: 2025. 3. 14.

124)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le Floor Remarks on H.R. 1968, the 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2025. 3. 11.,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remarks/cole-floor-remarks-hr-1968-full-year-continuing-appropriations-and-extensions-act-2025>, 검색일자: 2025. 3. 20.

규모에 준하여 집행하는 임시예산*(3차)으로 처리¹²⁵⁾하면서 2026회계연도(2025.10.~2026.9.) 대통령 예산안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025회계연도 1차 임시예산(P.L. 118-83): 효력 기한(~2024.12.20.)

* 2025회계연도 2차 임시예산(P.L. 118-158): 효력 기한(~2025.3.14.)

* 2025회계연도 3차 임시예산(P.L. 119-4): 효력 기한(~남은 2025회계연도 전체)

-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회계연도인 2025회계연도는 최근까지 임시 예산으로 운영 중이었던바, 이를 이어 받은 트럼프 정부는 5개월여 정도 남은 2025회계연도(~2025.9.30.) 기간에 대한 예산을 임시예산으로 운영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대통령 예산안이 발표되는 202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갖추

☑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정책 방향) 하원 세출위원회 공식 웹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안정성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고문을 게재¹²⁶⁾

- 해당 기고문은 의회 예산 과정의 핵심 상임위원회인 세출위원회 소속 위원의 글이라는 점에서, 향후 세출위원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 여부 등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내무 환경(Interior, Environment) 소위원회 의장의 기고문에는 국내 에너지 생산 강화, 광물 접근성 확대 등을 주요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런 정책들이 국가 안보와 인플레이션 감축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강조¹²⁷⁾하고 있는바, 이 또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에너지 활성화 및 광물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25)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le Floor Remarks on H.R. 1968, the 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2025. 3. 11.,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remarks/cole-floor-remarks-hr-1968-full-year-continuing-appropriations-and-extensions-act-2025>, 검색일자: 2025. 3. 20.

126)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iscomani: Our National Debt Demands Immediate Action," 2025. 1. 30.,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op-eds/ciscomani-our-national-debt-demands-immediate-action>, 검색일자: 2025. 3. 14.

127)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Simpson: My priorities as Chairman of the House's Interior and Environment Appropriations Subcommittee," 2025. 2. 19.,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op-eds/simpson-my-priorities-chairman-houses-interior-and-environment-appropriations>. 검색일자: 2025. 3. 20.

☑ (하원 예산결의안¹²⁸) 방향¹²⁹) 하원 예산위원장은 미국 우선순위(America First) 아젠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친성장, 친에너지, 친노동자, 세금 경감, 규제 완화, 낭비 삭감 등의 프레임워크를 제시

※ (예산결의안)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에 근거하여 대통령 예산안이 발표되면 미 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각각 예산결의안(의회 예산 심의 청사진) 심의에 착수

-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섯 가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 제시
 - ① 연방 지출 감축 ②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 ③ 세금 인하 ④ 규제 완화 및 관료적 행정 절차 축소 ⑤ 일자리 진입(또는 재진입)장벽 제거
- 주요 정책 목표는 향후 10년 동안 의무지출을 2조달러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
 - 2019년 이래 의무지출이 59% 증가하였으며, 전체 연방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
- 주요 지침(Instructions)으로는 향후 10년간 군사, 국토안보, 법사위원회, 세입위원회 분야의 지출은 확대하는 등 향후 10년에 대한 분야별 예산 증감 지침을 제시함
 - (감축) 농업위원회(최소 2,300억달러), 교육 등(3,300억달러), 에너지(최소 8,800억달러), 금융(최소 10억달러), 천연자원(최소 10억달러), 정부감독 및 개혁(최소 500억달러), 교통 및 인프라(최소 100억달러)
 - (증가) 군사위원회(최대 1,000억달러), 국토안보(최대 900억달러), 법사위원회(최대 1,100억달러), 세입위원회(최대 4.5조달러 적자 확대)
- 법정 채무 한도: 4조달러 증가시키는 법률 변경안을 제출해야 함
 - 미국 연방 채무한도는 현재 유예*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며, 의회의 채무 관련 합의(입법)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운영은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128) H.Con.Res.14 - 2025. 2. 13. - <https://docs.house.gov/meetings/BU/BU00/20250213/117894/BILLS-119NAih.pdf>

129)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Statement from Chairman Arrington on President Trump's Endorsement of House Budget Resolution," 2025. 2. 19., <https://budget.house.gov/press-release/statement-from-chairman-arrington-onpresidenttrumps-endorsement-of-house-budget-resolution>, 검색일자: 2025. 3. 17.

통해 이행되는데, 최근까지도 의회는 채무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23년 6월 3일에 통과된 2023 재정책임법(FRA, Fiscal Responsibility Act 2023)에 따라 채무한도의 적용이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됨(2023.6.3.)¹³⁰⁾

☑ (상원 예산결의안¹³¹⁾ 방향)¹³²⁾¹³³⁾ 국경 안보 확립, 국방 재건, 에너지 생산 활성화, 재정 건전성 회복을 필두로 한 예산결의안 방향 제시

- 바이든 정부의 관련 규제 철회,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법 집행, 미국의 이익 (interest)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유지 등의 목표를 포함

130) 미국 의회, “H.R.3746 -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Public Law No. 118-5), 118th Congress(2023-2024),” 2023. 6. 3.,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3746/text>, 검색일자: 2025. 3. 26.

131) S.Con.Res.7 - 2025. 2. 21.

132) 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Chairman Graham Unveils FY 2025 Budget Resolution To Secure The Border, Revitalize Our Military, Unleash American Energy Production And Begin The Process Of Restoring Fiscal Sanity,” 2025. 2. 7., <https://www.budget.senate.gov/chairman/newsroom/press/chairman-graham-unveils-fy-2025-budget-resolution-to-secure-the-border-revitalize-our-military-unleash-american-energy-production-and-begin-the-process-of-restoring-fiscal-sanity>, 검색일자: 2025. 3. 24.

133) 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Chairman Graham Speaks on Senate Floor Ahead of Budget Resolution Vote-A-Rama,” 2025. 2. 20., <https://www.budget.senate.gov/chairman/newsroom/press/chairman-graham-speaks-on-senate-floor-ahead-of-budget-resolution-vote-a-rama>, 검색일자: 2025. 3. 24.

IV. 결어

- ☑ 현재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에 위치해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호적인 정치 기반이 마련
 - 즉 미국 내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은 당분간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관세 정책을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국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이 큰 주요 정책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국 및 해외 주요국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 ☑ 한편 정권 교체기라 지연*되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예산안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 *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정권 교체기에는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 트럼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진행되는 논의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부록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2025.4.2. 발표)¹³⁴⁾

- 상호 관세 부과(10% 일괄 부과)와 함께 발표된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관세는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중심의 통상 정책 방향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언급
 -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단순한 관세 장벽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 시장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제한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 요소들까지 확대 반영된 것이 특징

1. 배경

- ☑ (상호 관세 부과 주요 요인) 양자 무역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대칭적인(disparate)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임금·소비 억제 정책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비정상적(unusual)이고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

〈참고〉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서 언급된 비관세 장벽 주요 개념

- 수입 인·허가 제한, 통관상의 절차 등
(licensing restrictions, customs barriers)
- 기술적 무역 장벽(예: 불필요한 교역 제한 기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unnecessarily trade restrictive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투자 장벽, 보조금, 반경쟁적 행위 등
(investment barriers, subsidies, anti-competitive practices)
- 국영기업에 대한 차별적 우대
(discrimination in favor of domestic state-owned enterprises)
- 노동 및 환경 기준 미흡, 뇌물수수, 부패 등
(failures by governments in protecting labor and environment standards, bribery, and corruption)

134) 백악관,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2025. 4. 2., <https://www.whitehouse.gov/press-identic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검색일자: 2025. 4. 4.

- 해외 상품 의존도(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증가는 제조업 약화, 공급망 취약, 국방산업 기반의 해외 의존을 초래하면서 국가 및 경제 안보* 모두 위협을 받고 있음을 언급
* 국내 생산 능력을 국가 경제 안보의 초석(bedrock)이자 국내 혁신의 핵심 동력(main engine) 개념으로 접근
- 미국 무역적자는 지난 5년 동안 40% 이상 증가하여 2024년에 1조 2천억달러로 집계 (<부표 1> 참고)

<부표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추이

(단위: 억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458	9,015	10,708	11,734	10,621	12,029

자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TradeStats Express," 검색일자: 2025.4.4.

2. 주요 관세 조치

- ☑ (상호 관세) 모든 무역 상대국 수입품(all imports from all trading partners)에 2025년 4월 5일부터 일괄적인 10% 추가 관세 부과
- ☑ (별도 관세) 별도 지정국가(Annex 1)의 경우, 2025년 4월 9일부터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고, 별도 지정되지 않은 국가는 10%의 상호 관세만 부과(<부표 2> 참고)
* 즉 중국의 경우, 이미 부과되었던 추가 관세 20%에 상호 관세 34%가 추가된 것이기에 최대 5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단 면세가 부여되는 소액 품목 수입품의 경우 30%만 부과하는 것으로 재조정)
- (관세 기간) 해당 조치는 현 무역적자의 주요 문제점들이 충족(satisfied), 해결(resolved), 완화된(mitigated) 것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적용

〈부표 2〉 별도 관세율 적용 국가

※ 관세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국가		관세율	국가		관세율
1	레소토(Lesotho)	50%	2	캄보디아(Cambodia)	49%
3	라오스(Laos)	48%	4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47%
5	베트남(Vietnam)	46%	6	미얀마(Myanmar(Burma))	44%
7	스리랑카(Sri Lanka)	44%	8	포클랜드제도(Falkland Islands)	41%
9	모리셔스(Mauritius)	40%	10	이라크(Iraq)	39%
11	가이아나(Guyana)	38%	12	보츠와나(Botswana)	37%
13	방글라데시(Bangladesh)	37%	14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37%
15	태국(Thailand)	36%	1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bina)	35%
17	중국(China)	34%	18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33%
19	앙골라(Angola)	32%	20	피지(Fiji)	32%
21	인도네시아(Indonesia)	32%	22	대만(Taiwan)	32%
23	스위스(Switzerland)	31%	24	리비아(Libya)	31%
25	몰도바(Moldova)	31%	26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31%
27	알제리(Algeria)	30%	28	나우루(Nauru)	30%
29	파키스탄(Pakistan)	30%	30	튀니지(Tunisia)	28%
31	인도(India)	27%	32	카자흐스탄(Kazakhstan)	27%
33	한국(South Korea)	25%	34	일본(Japan)	24%
35	브루나이(Brunei)	24%	36	말레이시아(Malaysia)	24%
37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21%	38	나미비아(Namibia)	21%
39	유럽연합(EU)	20%	40	요르단(Jordan)	20%
41	니카라과(Nicaragua)	19%	42	필리핀(Philippines)	18%
43	짐바브웨(Zimbabwe)	18%	44	이스라엘(Israel)	17%
45	잠비아(Zambia)	17%	46	모잠비크(Mozambique)	16%
47	노르웨이(Norway)	16%	48	베네수엘라(Venezuela)	15%
49	나이지리아(Nigeria)	14%	50	차드(Chad)	13%
51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13%	52	카메룬(Cameroon)	12%
53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1%			

자료: 백악관,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Annex 1, 2025.4.2.

☑ (상호 관세 예외 품목) 이미 부과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이번 상호 관세에서 예외를 두며, 기존 조치 그대로 적용

- 한편 캐나다 에너지 제품¹³⁵⁾의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는바, USMCA의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나, USMCA 제품이 아닐 경우에 한해 10% 관세 부과
-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전략 광물 등¹³⁶⁾도 예외 품목에 포함
- 소액 품목 수입품의 무관세 혜택 규정은 지속 적용(단 중국에는 30% 관세 부과 유지)
 - 소액 품목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신속(expeditiously)하고 완전(fully)하게 처리 및 징수할 수 있는 적정(adequate) 시스템이 완비되었다는 보고(상무부 장관 → 대통령)를 받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

☑ (향후 전망)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보고서¹³⁷⁾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USMCA 재협상, 환율 조작 검토,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신규 협정 발굴, 소액 면세 종료 등의 정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

-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무역 협정은 상호 관세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USMCA의 효력은 인정 → 따라서 USMCA 요건에 부합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 품목의 경우, 의회의 입법 제동이 없는 한 이번에 발표된 상호·별도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당분간 제외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부 장관은 의회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상호주의 관세는 국가별 관세 상한(cap)을 의미하며, 해당 국가들이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관세는 인하될 수 있음을 언급¹³⁸⁾함으로써, 국가별 별도 협정에 대한 기존 방향을 재확인 것으로 볼 수 있음

135) 탄산 칼륨(potash) 등 일부 품목을 의미

136) 구체적인 예외 품목은 부속서 II(Annex II) 참고

137) 백악관,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America First Trade Policy Executive Summary,” 2025. 4. 3.,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report-to-the-president-on-the-america-first-trade-policy-executive-summary/>, 검색일자: 2025. 4. 7.

138) Reuters, “White House says Trump will go ahead with tariffs as nervous world awaits trade war,” 2025. 4. 2.,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aides-draft-proposal-least-20-tariffs-most-imports-us-washington-post-2025-04-01/>, 검색일자: 2025. 4. 4.

주요 자료 출처

국가 기관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
- U.S. Congress, <https://congress.gov>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s://www.gao.gov>
- U.S.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News, <https://appropriations.house.gov>
- U.S. Senate Committee on the budget, <https://www.budget.senate.gov>
- Whitehouse, Executive Order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s>
- Whitehouse, Fact Sheets,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
- Whitehouse, Proclamation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

국제기구

- WHO, <https://www.who.int>

연구 기관

-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
-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
-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

언론

- BBC, <https://www.bbc.com>
- Politico, <https://www.politico.com>
- Reuters, <https://www.reuters.com>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 및 시사점



kip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